

종로5·6가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정 2010. 12. 08.
일부개정 2011. 07. 13.
일부개정 2012. 02. 09.
일부개정 2014. 06. 12.
일부개정 2017. 11. 09.
일부개정 2023. 04. 20.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종로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치회관(이하 “회관”라 한다) 관리·운영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명칭은 종로5·6가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조(기능) 회관은 문화·교양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사회 진흥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프로그램 수강 신청 및 접수) ① 회관 운영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분기별 지정된 접수 기간에 한다.

② 위원회는 프로그램별 수강 신청 시 수강료를 징수하고 수강증을 발급한 후 신청자 현황을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와 수강료는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23.4.20.)

②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0.)

③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금에서 유급강사 강사료, 주민자치회관 운영요원 인건비, 각종 공과금, 주민자치회관 시설유지비 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사용료 등의 환불) ① 시설 사용 전이거나 프로그램 개시 전에 신청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② 시설 사용일 또는 수강 기간 1/2 진행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서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본조신설 2023. 4. 20.]

제6조(이용 등) 동장은 자치회관의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서 그 비용을 지출한다. (개정 2023. 4. 20.)

제7조(수당 및 실비 보상 등)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실비 보상 금액중 급량비는 공무원 특근 매식비 단가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은 최소한 실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강사료는 생활체육교실은 수강료수입금의 85%, 취미교양교실 및 컴퓨터교실 등 기타교실은 수강료수입금의 80%를 지급하되, 월 500,000원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강사 간 쌍방 협약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0. 12. 8., 단서 신설 2014. 6. 12., 2017.11. 9., 2023. 4. 20.)

제8조(분과위원회 기능) ① 조례 제16조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7. 13., 2023. 4. 20.)

1. 운영 분과위원회

가. 자치회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가. 지역봉사활동, 저소득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나.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3. 환경건설 분과위원회

가. 마을 청소, 제설, 지역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를 거쳐 지명하거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4. 20.)

제9조(공개 등) 다음 각 호의 공개사항은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개한다. (개정 2023. 4. 20.)

- 1.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지출 내역
- 2.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신규 위촉 포함)
- 3. 기타 동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고자 할 사항

제10조(월례회의) 정기 월례회의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로 한다. 단 법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로 한다. 또한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3., 2012. 2. 9., 2023. 4. 20.)

부칙(2010. 12. 8.)

제1조(시행)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제7조에 규정된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관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유보하되 그 시기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2011. 7. 13.)

제1조(시행)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9.)

제1조(시행)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6. 12.)

제1조(시행)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9.)

제1조(시행)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20.)

제1조(시행)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사용료 등(제5조 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단 위	면 적	상한금액	비 고
사용료	1회 1시간	050㎡ 미만	10,000원	· 부대시설포함 · 평일야간, 주말, 휴일 25% 가산
		050㎡ 이상 ~ 100㎡ 미만	15,000원	
		100㎡ 이상 ~ 150㎡ 미만	20,000원	
		150㎡ 이상 ~ 200㎡ 미만	25,000원	
		200㎡ 이상	30,000원	
수강료	월	-	50,000원	1인 1프로그램

※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사용료 등 감면 기준

구 분	감면비율	대 상	비 고
사용료	100 퍼센트	◦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 적용) ◦ 종로구 및 종로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한 비영리 직능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50 퍼센트	◦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종로구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1명당 2강좌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가족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 가장	
	50 퍼센트	◦ 65세 이상 어르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